○○초 학생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수원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가소○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구상금
원 고	○○○○○○공단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2020. 8. 11. 원고일부승	비 고	
사건개요	❍ 소외 □□□(이하 '피해자'라 함)은 2019. 6. 11. 12시경 교실에서 칠판을 닦으려고 상하 이동식칠판을 올리는 과정에서 칠판 위 태극기 액자가 얼굴에 떨어져 비골의 골절, 폐쇄성, 코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고 ◇◇◇◇병원에서 2019.6.11.자부터 진료를 받았으며, 총 1,105,440원 중 피해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공단부담금 830,690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음. ❍ 원고는,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, 피해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 취득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부담금 금830,690원을 구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피고는 원고에게 221,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0. 24.부터 2020. 8. 1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7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		
판결이유	❍ 피고로서는 위 교실 내 이동식 칠판을 태극기 액자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이동식 칠판의 레버를 고정시키는 등 교실 내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. 따라서 피고가 설치한 위 시설물에는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는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·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. ❍ 다만, 위 학교에서 평소 위 이동식 칠판의 레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부착하고 이를 안내하는 등 안전교육을 성실히 하였는데도 피해 학생이 임의로 이를 작동하여 상해를 입게 된 잘못이 있고,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,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%로 제한함. - 구상금액: 221,088원 피해자의 총 손해액: 1,105,440원 * 20%		